

등록번호	주차관리과-16796
등록일자	2015.6.12.
결재일자	2015.6.1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차관리1팀장	주차관리과장	안전건설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원훈	류웅걸	박희균	황치영	06/16 최창식
협 조	주차시설팀장	임영래		
	가로환경과장	백기운		
도로시설과장	이동훈			
교통행정과장	고영자			

-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-

불법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 정비 계획



안전건설국
주차관리과

-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-

불법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 정비 계획

도로 및 보도 상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, 도로 점용행위로 시민보행 장애 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보행 장애를 방지하고 질서의식을 확립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- 구청장 지시사항(월요간부회의 2015.6.1.)
- 도로교통법 제32조, 제33조(정차 및 주차금지), 제162조(통칙) 동법시행령 제93조(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)
- 도로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, 제114조(벌칙)
-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, 동법 시행령제6조
- 자동차관리법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

II 일반 현황

□ 이륜자동차 현황 (2015.5.31일 현재)

- 이륜자동차 신고 대수 : 총 14,795대(관용 240, 일반 14,555)
- 방치 오토바이 처리(2013년 ~ 현재)
 - 접수 1,400대 (강제처리 400대, 소유자반환 1,000대)

□ 주차장 현황 : 172면

- 동대문지역(42면) : 구민회관, 중앙의료원, 동대문비즈센터
- 남대문시장주변(101면) : 연세상가, 자유상가, 2,3번케이트
- 기타지역 (29면) : 중앙우체국, 서울스퀘어 앞

□ 이륜자동차 단속 권한

- 불법운행(보도, 차로), 불법 주·정차 : **경찰(범칙금 3만원)**
 - 도로교통법 제32조, 제33조, 제34조(주·정차금지 위반)
- 도로 점용료 부과(도로 및 보도 상) : **가로환경과**
 - 중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
- 무단 방치차량 처분 및 번호판 미 부착 단속 : **교통행정과, 경찰서**

Ⅲ 불법 주차 실태

-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실태조사
 - 조사기간 : 2015. 6. 4 ~ 6. 5(2일간)
 - 조 사 자 : 주차관리1팀장 외 1명
- 실태조사 결과 - **붙임 현황도 참조**

구 분	주차실태	주차대수
불 법 주 차 (2 9 개 소) *5대이상 주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시장 입구(남대문, 동대문)주변</u> 보도 및 도로상 물품 수송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 ○ <u>청계천로 평화시장 ~ 버들다리 구간</u> 물품 수송 및 출·퇴근 이륜차의 청계천변 및 보도상 주차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음 ○ <u>청구로(시구문~청구역)구간</u> 택배, 가내공업 수송용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도로 기능저하 및 도시미관 저해 	482
도로(보도)점용 (4 2 개 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다산로(신당동) 주변</u> 이륜자동차 수리 및 판매상의 보도 상 물품 진열로 보행에 불편 ○ <u>퇴계로(동호로)의 이륜자동차 판매상 밀집지역</u> 보도 상 물품 진열 및 도로 불법 주차로 보행에 불편함과 도로기능 저하 	575
무 단 방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쇄소 이면도로, 이륜자동차 수리점, 공원 주변 이륜자동차 고장으로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	4

● 이륜자동차 불법주차 현장

- 도로상 불법주차



- 도로 및 보도상 무단점용(오토바이 진열)



- 무단방치 및 도로상 불법행위(도로상 수리, 세차, 방치)



IV

문 제 점

□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단속

●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, 실효성 있는 단속 곤란

-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·정차는 차량의 불법 주·정차와 달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)

※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요청(2014년 10월) : 서울시 ⇒ 경찰청

●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

- 주요 불법 주차 지역은 시장입구(남대문, 동대문, 평화시장 등)로 수시 상품 수송 및 출·퇴근용으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 (우리 구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 172면)

● 도로 및 보도 상 불법 무단점용(오토바이 상품 진열)

- 이륜자동차 수리 및 판매점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상품 및 수리 차량의 도로 및 보도에 무단방치(적치물)
- 퇴계로 이륜차 밀집지역에서는 중고 차량의 판매 목적으로 도로상에서 세차와 수리행위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
 - ▶ 중고 차량 세차, 삼발이 수리 제조 등

● 이륜(삼발이)자동차 방치

- 이면도로 등 장기 주차로 운행불가 이륜차 방치와 또한 수리업소의 주변 위주로 방치되고 있음

V

개선할 점

● 이륜차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추가설치 필요

- 남대문, 동대문, 평화시장 등

● 도로 및 인도에 불법주차 이륜차는 전용주차장으로 유도

● 남대문, 동대문 등 주요 시장일대를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

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

● 향후 불법주차 단속권한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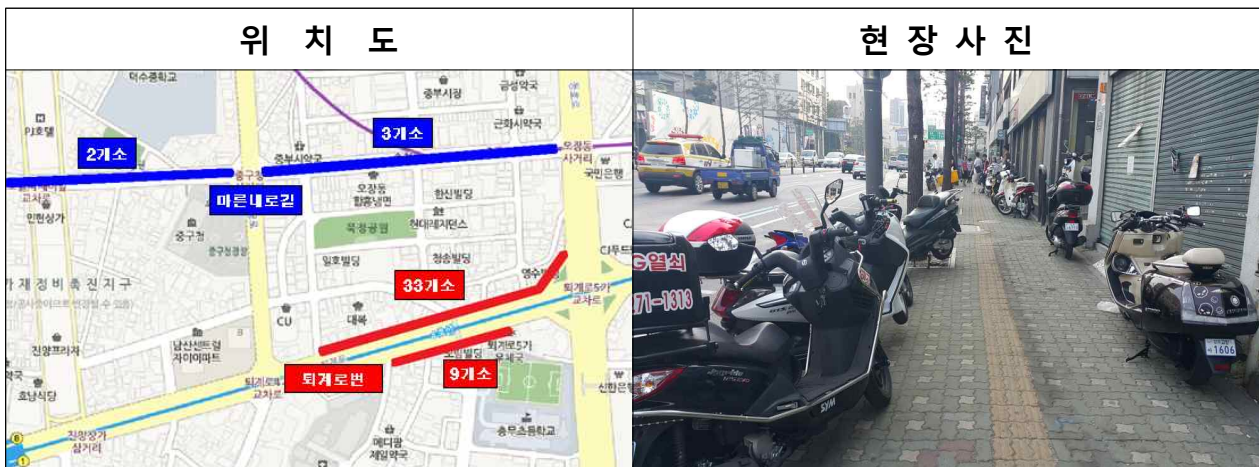
VI

추진 계획(정비계획)

1 퇴계로 등 보도 및 도로상 무단적치 오토바이 정비

기본방향 : 가게 앞 1열 적치 외 허용불가로 시민 보행권 확보

- 단속구간 : 퇴계로 오토바이 거리, 마른내로길 일대
- 단속대상 : 오토바이 가게 47개소(퇴계로변 42개, 마른내로길 5개)
- 주차실태
 - 가게 앞 보도 및 도로상 2열 이상 적치로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
 - 적치물 외 오토바이 수리행위, 손님 주차 등의 문제점



추진일정

- 1단계(사전계도) : 2015. 6. 15. ~ 6. 21.
 - 자진정비 안내문 배포 및 계고장 발부
- 2단계(집중단속) : 2015. 6. 22. ~ 6. 28.
 - 1열 이상 적치시 강제정비 및 과태료 부과
 - 1일 2회이상 순찰 및 단속
- 3단계(사후관리) : 2015. 6. 29. ~
 - 단속인력 고정배치(가로환경살피미 2명) 및 지속단속
 - 상습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

주관부서 ----- 가로환경과

2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계획

기본방향

- 오토바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(남대문, 동대문, 을지로)을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가능 장소(시 및 구도로) 선정
- 조업 주정차 등으로 보행 교통 장애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
- 도로의 너비,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

문제점 및 대책

- 오토바이 운행목적은 대부분 생계형(상가 등 조업 상하차)으로 근접 주차를 위해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도 상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무단주차
⇒ 가로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는 경찰 단속 및 주차장으로 유도 필요
- 오토바이 주차장은 24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, 별도 관리 요원이 없어 장기 주차 및 방치 등 유지관리가 어려움
⇒ 정기적인 점검으로 무단 방치 오토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조치
-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정 장소 선정의 어려움
⇒ 해당지역 상인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장소 선정 협의

추진일정

- 마른내로 포켓주차장(가로형태개선) 설치(도로시설과) ----- 7월
- 포켓일반주차 15면, 포켓이륜주차 13면(전액 시비)
-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도로 선정 검토 및 기존 주차장 유지관리 ----- 7~8월
- 해당지역 상인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장소 선정
- 오토바이 주차구획 설치 협의(서울시 및 경찰서) ----- 9~10월
- 적정 장소 선정에 따른 협의(포켓주차, 교통규제심의 등)
- 시비지원 확보 및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----- 11~12월

주관부서 ----- 주차관리과

3 무단방치 오토바이 단속 및 정비

기본방향 : 쾌적한 교통문화 확립

추진계획

- 단속기간 : 2015. 6. 15 ~ 근절시 까지
- 단속대상 :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
- 단속지역 : 퇴계로, 광희동, 중앙시장, 필동 일대, 남대문 등
- 수시단속 : 다중집합 장소 및 주택가 순찰, 단속 및 계도

추진 일정

- 1단계 : 2015. 6. 15. ~ 6. 30.
 -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안내문 부착
 - 무등록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 홍보
- 2단계 : 2015. 7. 1. ~ 7. 10.
 - 안내문 부착 자동차 2차 확인 및 견인의뢰
 - 무등록 이륜차 운행자 발견 시 경찰 단속 요청
- 3단계 : 2015. 7. 11. ~ 근절시 까지
 - 1일 2회 이상 관내 취약지역 및 다중집합 장소 수시 순찰 단속 및 계도
 - 무등록 이륜차 운행자 발견 시 경찰 단속 요청

주관부서 ----- **교통행정과**

4] 오토바이 포켓주차장 설치 계획

기본방향

- 보도 상 이륜자동차의 주행 및 불법주정차 행위가 보행자 안전 위협
- 단속과 병행으로 포켓주차장 조성을 통한 선진화 유도

설치 지역 및 방법

- 이륜자동차 출입이 많은 지역(생계형 이륜자동차)
- 보도 위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많고 유효 폭이 4m 이상인 지역
- 가로수 사이 공간 활용으로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
- 보도 유휴 공간을 절취하여 포켓주차장 설치

추진 일정

- 이륜주차장 설치 대상 조사 및 시범지역 선정 ----- 6월
- 이륜주차장 설치 협의(서울시 및 경찰서) ----- 7월
- 시비 지원 등 예산 확보 ----- 8~9월
- 이륜주차장 시범 조성 ----- 10~11월

주관부서 ----- 도로시설과

이륜자동차 특별 합동 단속 정비계획 및 운영

- 단속기간 : 2015.06.15. ~ 근절시 까지
- 관련부서 : 가로환경과, 교통행정과, 주차관리과, 경찰서(지구대)
- 단속일시 : 주 1일(유선통보)
- 주요단속 지역 : 동대문시장, 남대문시장, 퇴계로, 필동일대 등

● 주요 단속내용

- 도로 및 보도 상품적치, 세차, 수리행위(퇴계로 등)
- 도로 및 보도 상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
- 보도 및 역주행, 미등록(봉인탈락, 번호판훼손 등)
- 불법구조 변경(삼발이, 택배, 음식점, 소음기 개조 등)
- 방치 이륜차량 처리

VII

행정 사항

□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계획 수립

- 불법행위 합동 단속 추진 및 주차단속 ----- 주차관리과
- 보도 및 도로변 상품적치(이륜차) 단속 ----- 가로환경과
- 방치차량 및 미등록 이륜차 단속 ----- 교통행정과
- 오토바이 포켓주차장 설치 ----- 도로시설과
- 도로상 역주행 및 신호위반 단속 ----- 중부서, 남대문서

<붙임 1>

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현황 : 총 172면

지역별	장 소	주차면수 (사선주차)	설치일자	운영시간
동 대 문 지 역 (중부경찰서)	구 민 회 관 앞	20	2012.11.24	24시간연중 (2시간이내)
	중 앙 의 료 원 옆	12	2012.11.24	
	동대문비즈센트 앞	10	2013.8.13	
남 대 문 지 역 (남대문경찰서)	남대문시장 연세상가	19	2012.11.24	
	남대문시장2번게이트	9		
	남대문시장3번게이트	9		
	남대문시장 자유상가	14		
	남대문5가 서울스퀘어 빌딩 앞	10		
	중 앙 우 체 국 옆	19		
	남대문시장 알파문구	50	2013.5.24	

<붙임 2>

주차단속 계도 홍보물

이륜자동차(오토바이) 단속안내

우리구에서는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(인도·차로) 행위를 무기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 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.. 위반시에는

- ➔ 횡단보도, 교차로 등 불법주·정차 하는 행위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, 범칙금 3만원
- ➔ 차도 및 보도에 주·정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
도로교통법 제 32조 내지 제34조, 범칙금 3만원
- ➔ 장기간 도로상에 방치하는 행위
자동차관리법 제 26조(자동차의 강제 처리)
- ➔ 보도로 불법주행하는 행위
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, 범칙금 4만원



중구 서울특별시 중구
주차관리과 ☎ 3396-6250